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2449 제재조치명령취소
원 고	재단법인 씨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목동)
	대표자 이사 권오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민영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최성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창민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1. 22.

주 문

1.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2. 20. '원고가 씨비에스(CBS)-에이엠(AM) 라디오 채널에서 2013. 11. 25. 08:00부터 08:30까지 방송한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에서 진행자 김현정(이하 '진행자'라 한다)이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출연진이 별지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이 정한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과 제14조가 정한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주의'라는 제재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및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하면서 박창신 신부가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 ‘현재 댓글도 121만 개인가 되고 컴퓨터에서 개표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오는 등 불법선거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엄청난 부정이다’ 등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발언을 방송하는 한편, ‘엔엘엘(NLL)은 독도보다 예민한 분쟁지역인데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엔엘엘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등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엔엘엘 인근에서의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해 촉발된 것처럼 단정하는 발언 등을 방송한바,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들임에도 진행자가 출연자 발언의 근거를 묻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출연자의 일

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되도록 방치한 측면이 있고, 대체로 출연자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확인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지하여 결과적으로 출연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는 심의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14조에 위배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4. 방송법 제100조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은 기자들이 각자 취재한 내용을 취합하여 보도하는 일반적인 뉴스프로그램과 달리 인터뷰를 중심으로 시사 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어서 제작진이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뉴스에서와 같은 정도의 공정성 및 균형성과 객관성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진행자가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박창신 신부의 주장을 여러 차례 점검하고 때로는 반박하는 취지의 질문을 함으로써 박창신 신부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② 원고가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서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하여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이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①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은 박창신 신부에게 시국미사 강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의도였고 진행자가 박창신 신부

와 다른 관점에서 박창신 신부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박창신 신부가 위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박창신 신부의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인 점, ② 원고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서 박창신 신부의 발언 내용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은 뉴스 보도 프로그램이어서 다른 교양·오락프로그램과 달리 청취자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므로 더 강화된 공정성 및 균형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방송에 앞서 박창신 신부의 발언 내용을 알 수 있어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비가 가능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진행자는 박창신 신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나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동조하면서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은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① 박창신 신부의 발언 내용에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불확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진행자는 이를 지적하거나 그 근거에 대하여 질문하는 등 청취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진행자는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요약하고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청취자의 혼동을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은 방송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진행자가 이슈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자 4명에 대하여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각 인터뷰 사이에 선임 기자 김진오가 주요 뉴스를 보도하는 '김진오의 눈', 아니운서 최동미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보도하는 '포털뉴스', 시사평론가 김성완이 뉴스의 이면을 소개하는 '김성완의 행간', 기자 변상욱, 권영철, 안성용이 특정 사건(아동학대 사건 등) 또는 특정 주제(연말정산 등)에 관하여 심층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수첩'이 편성되어 있다. 토요일에는 위키프레스 편집장인 정영진이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소개하고 문화·예술계 인사가 화제가 된 문화·예술 행사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인 박창신 신부는 2013. 11. 22. 저녁 군산시 수송동 소재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신도들에게 강론(講論)을 하면서 '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퇴진하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시국미사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시국미사 발언은 신문, 인터넷 매체 등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되어 여론의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치권에서도 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시국미사 발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이 사건 시국미사 발언의 당사자인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함으로써 이 사건 시국미사 발언의 경위나 취지 등에 대한 박창신 신부의 입장을 듣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 직후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인터뷰를 함으로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4) 진행자는 2013. 11. 25. 08:00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에 관하여 설명하고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서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천주교의 시국미사,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대단합니다. 금요일에 천주교교구에서 있었던 미사 중에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요. 박창신 신부를 저희가 어렵게 직접 섭외했습니다. 도대체 이 강론을 어떤 주제로 했던 건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 분의 직접 답변도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리고 여야의 반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5) 진행자는 박창신과 별지 방송내용 기재와 같이 1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6) 진행자는 박창신과의 인터뷰에 이어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과 7분 18초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김재원 의원과의 인터뷰에 이어서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최재성 의원과 6분 56초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재원 의원은 박창신 신부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하여 "사제의 겸허하고 겸손한 영역을 훨씬 벗어났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재원 의원은 박창신 신부의 엔엘엘 관련 발언에 대하여 "이분은 엔엘엘의 역사적인 형성과정과 또 현재의 엔엘엘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북방한계선 자체가 마치 북한의 영토인 양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영토 안에 들어가서 군사연습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쐈다는 이 논리인데,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매국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반박하였다.

② 최재성 의원은 박창신 신부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하야하거나 사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직접 대선에 불법개입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혹은 광범위한 조직과 개입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고, 박창신 신부의 엔엘엘 관련 발언에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일단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안보와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평화는 안보 없이는 안 된다. 안보도 평화 없이는 안 된다는 아주 전통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군의 포격 훈련이 위협적으로 작용을 했고 당일 중단하라고 전통문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도 대응사격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제네바협정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어떤 식으로든지 용납될 수 없는 건데요"라고 지적하였다.

라. 판단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 방송의 자유도 포함됨은 분명하다. 방송의 자유도 주관적 공권으로 자유권의 하나이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방송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므로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반면에 전파에 대한 독점권을 누리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특별한 독점권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언론사와 달리 방송의 상대방인 시청자나 청취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 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심의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은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의규정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여 이 사건 방송의 공정성·균형성과 객관성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이 공정성·균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방송은 매체별·채널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매체 또는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므로 방송의 공정성·균형성과 객관성은 매체별·채널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의규정 제10조가 사실 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고 있는 점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은 뉴스 보도도 내용으로 하지만 이슈가 되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시사 현안을 다루는 것을 주

된 내용으로 하고 이 사건 방송도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되는 부분(이하 '인터뷰 부분'이라 한다)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 즉 인터뷰 부분은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려는 목적보다는 인터뷰 대상자인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하여 진행자가 부연설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청취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무조건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청취자가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부분의 청취자도 인터뷰 부분을 청취함으로써 객관적 사실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어떤 반론이 제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뷰 부분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인터뷰 부분의 성격, 청취자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인터뷰 부분의 공정성·균형성과 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인터뷰 부분은 짧은 시간 내에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인터뷰 대상자와 논쟁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므로 진행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자발적인 발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뷰 중에 반론이나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반면에 원고가 사전에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행자가 인터뷰 당시 적절한 질문이나 반론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직후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반박이나 논평이 이루어졌다면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

의 의견의 근거가 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도 이는 인터뷰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그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위를 파헤치지 않았다고 하여 방송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터뷰 대상자의 지위나 경력,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청취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고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별지 방송내용 기재 진행자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에서 진행자는 박창신 신부의 주장을 여러 차례 점검하면서 그에 대하여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박창신 신부가 18대 대통령선거가 국가정보원 등 모든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에 해당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퇴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진행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당측의 반론을 제시하였고, ② 박창신 신부가 엔엘엘이 분쟁지역이므로 그곳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진행자는 박창신 신부가 속한 정의구현사제단이 사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북한에 동조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비판과 종교인의 정치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마) 원고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서 박창신 신부의 발언 내용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청취자가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비판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진행자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 시작 전에 미리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서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렸다). 여당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은 박창신 신부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하여 사제의 영역을 넘어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고, 박창신 신부의 엔엘엘 관련 발언에 대하여 박창신 신부가 엔엘엘의 의미를 모르고 있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엔엘엘 인근에서의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해 촉발된 것처럼 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하였다. 야당 국회의원인 최재성 의원은 박창신 신부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될 상황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박창신 신부의 엔엘엘 관련 발언에 대하여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국제법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 박창신 신부는 이 사건 방송에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 '현재 댓글도 121만 개인가 되고 컴퓨터에서 개표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오는 등 불법선거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하는 등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박창신 신부는 정치인이나 사법기관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단순히 종교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방송에서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행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당측의 반론을 제시하였고 여야

국회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창신 신부의 위와 같은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박창신 신부의 독자적인 생각에 불과함을 청취자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 박창신 신부는 '엔엘엘은 독도보다 예민한 분쟁지역인데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엔엘엘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고 말하는 등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엔엘엘 인근에서의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해 촉발된 것처럼 말하였는데, 박창신 신부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박창신 신부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은 박창신 신부의 위와 같은 발언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임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방송내용

박창신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잘 주무셨어요?
박창신 : 네 잘 잤어요.
진행자 : 마음 고생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박창신 : 아니요. 할 말 다 했으니까 아주 좋아요.
진행자 : 지금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신부님.
박창신 : 일파만파지만 일파만파돼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죠.
진행자 : 그러면 지난 금요일의 강론은 어떤 주제로 하셨던 건가요. 신부님?
박창신 : 주제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가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들이 말하자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 부정선거에서 제일 써먹기 좋은 것이 종북몰이예요. 종북몰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하는 시대의 중추를 오늘날 종북몰이로 봤어요. 종북몰이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나면 한 나라에는 항상 좌와 우가 있는 것이죠. 좌가 있고 우가 있는데 이 좌우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좌가 6. 25전쟁이나 북한이 있기 때문에 좌가 적으로 규정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좌라고 하면 그냥 깜짝 놀라고 좌라고 하면 따돌리고 죽여도 좋고, 감옥에 가둬도 좋고,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종북몰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군요.
진행자 : 그런데 종북몰이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신 건 어떻게 된 거죠?
박창신 : 그러니까 종북몰이를 이용해가지고 각 단체들이, 국가기관 단체들이 종북몰이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선거에 개입을 한 것이죠.
진행자 : 종북몰이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선거개입을 해서 부정선거가 치러졌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지금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진상규명 철처히 하라고 박 대통령은 지시를 하고 수사 중에 있고 재판 중에 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더러 하야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선동적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박창신 : 지금 수사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검찰총장도 쫓겨나고 하는데, 다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수사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진행자 : 지금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박창신 : 믿을 수 있겠냐고요. 국민들이요. 뒤에서 조종하고 감시하고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하고 검찰이 제대로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진행자 : 그럼 박근혜 대통령한테 철저히 수사해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야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박창신 : 하야도 아니에요. 그냥 퇴진이에요. 퇴진.
진행자 :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박창신 : 불법선거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지금 현재 댓글도 121만 개인가 이렇게 되고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이번에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이죠. 이게 엄청난 부정이죠.

진행자 : 그런 선거로 당선이 됐으면 본인이 그걸 시켰든 안 시켰든 거기에 대해 책임지고 퇴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창신 : 그럼요. 퇴진해야 하고 말고요.

진행자 : 특히 강연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 여당측과 청와대측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우리 대통령이 그거를 쏩니다"

박창신 : 아니 내가 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청중, 강론 듣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쏴야죠 그러더라고요.

진행자 : 사람들이?

박창신 : 그럼요.

진행자 : 그러면 "엔엘엘 문제 있는 곳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게 연평도 포격사건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신 : 내가 엔엘엘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지켜야죠. 그러나 엔엘엘이라는 것은 유엔군사령관이 해 놓은 것이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유엔군하고 서로 협상해서 만든 선이 아니고.

진행자 : 남북이 협상한 선이 아니다?

박창신 : 남한 쪽에서 월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1996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996년 15대 총선 때 말하자면 북풍몰이 한번 했었어요. 북한군 1개 중대가 박격포 가지고 판문점에서 하고 또 엔엘엘에서 대치전이 있었거든. 그때부터 말하자면 엔엘엘을 사수한다고 정부가 해서 그 뒤로부터 엄청난 서해교전이 있었잖아요. 5번인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엔엘엘은 북한에서는 자기 영해라고 하고 남한에서는 엔엘엘을 우리 거라 하고. 이게 지금 분쟁지역이잖아요. 그냥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분쟁지역. 이 분쟁이 어느 정도냐면 독도보다 더 예민한 분쟁지역이예요.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분쟁지역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제가 거기서 예들 든 거예요. 말하자면 독도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땅 문제가 있는데 일본군이 훈련하면 어떻게 하겠냐.

진행자 :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북한이 잘 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박창신 : 잘 쐈다는 얘기가 아니죠. 청와대에서 그런 걸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진행자 : 평화를 이야기하다가 나온 한 예. 우리가 지금 평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혼란한 엔엘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그 얘기가 나온 거다. 잘 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

박창신 : 그 얘기가 평화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종북몰이할 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진행자 : 자꾸 이용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와중에 나왔다?

박창신 : 종북몰이는 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날 6· 15 공동선언을 했잖아

요. 북한에 가서. 그래서 화해가 됐잖아요. 개성공단도. 금강산도 열고 해서 평양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을 계속해야 하는데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엔엘엘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했잖아요. 적으로 완전히 규정해서 종북몰이를 하는 거예요. 종북몰이 과정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종북자들은 민족의 적이다 해서 지금 종북몰이를 온 세상에 펼쳐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진행자 : 종북몰이에 대한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이지 오해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이신데,

박창신 : 그렇죠. 오해하지 말아야죠. 왜 완전히 서로 문제 일으키고 있는 분쟁지역에서 훈련을 하냐 그 말이에요. 싸움하려고요.

진행자 : 그럼 신부님.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구현사제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협박에 동조하듯이 사제 신분을 이용해서 우리 안보를 흔들고 있다. 종북 신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신의 영역까지 사제들이 침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답 하시겠습니까?

박창신 : 그거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교회가 아니에요.

진행자 : 이런 문제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

박창신 : 이 시대 이야기를 해야죠. 교회가.

진행자 : 시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정치개입을 종교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창신 : 정치가 부패하면 비판하고 해야죠.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예수님 쪽이 아니죠.

진행자 : 지금은 부패한 시대다. 이렇게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

박창신 :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지금 억측만 난무하고 어디 법이 제대로 있고 검찰이 제대로 합니까? 법원이 제대로 합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행자 : 박신부님,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박창신 : 해야죠.

진행자 : 다른 교구로도 확산됩니까. 혹시?

박창신 : 아마 조금 있으면 마산교회도 하고 할 겁니다.

진행자 : 지금 여당에서는 석고대죄해야 된다. 박창신 신부가.

박창신 : 왜 석고대죄를... 자기들이 정치를 잘 해야 이런 소리 안 듣죠. 안 그렇습니까? 종북몰이를 왜 하는 거예요. 종북몰이를.

진행자 : 신부님. 강연을 우리가 다 같이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연결을 해 봤습니다.

박창신 : 강론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진행자 : 청취자들에게 다 한 번씩 읽어봐라. 자세하게?

박창신 : 네 제 강론 읽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진행자 : 지금 인터넷 치면 전문이 다 나오니까 다들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관계 법령

■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주의 또는 경고

④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끝.